



## 임직원의 국외 주식매수선택권 등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안내

~소득법 §164 의 5 신설, 소득령 §216 의 5 신설~

임직원의 국외 주식매수선택권 등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부여에 대한 신설 관련 법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 [임직원의 국외 주식매수선택권 등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부여에 관한 안내](#)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 164 조의 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6 조의 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5 조【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 [문의처](#)

2024. 12. 20

Deloitte Anjin LLC  
Japanese Services Group(JSG)

## 임직원의 국외 주식매수선택권 등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부여에 관한 안내

(소득법 §164 의 5 신설, 소득령 §216 의 5 신설)

2024 년 세법 개정시 과세당국의 소득파악 강화 목적으로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주식기준보상을 지급받는 경우에 대하여 거래내역명세서를 제출 의무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개정법령에서는 거래명세서 제출의무자를 현지법인으로 규정하면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내년 3 월 10 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직원에 대한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여부의 파악 및 신고서 제출 여부에 대한 사전 파악이 필요함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제출대상자)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 포함)의 사용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출요건) ① 내국법인 임직원 또는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
  -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
    - ① 내국법인 임직원인 경우: 내국법인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한 외국법인
    - ② 국내사업장 임직원인 경우: 외국법인 본점·지점,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다른 외국법인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에 따른 국외지배주주 중 일부
  - 주식매수선택권등의 정의
    - 주식매수선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
- (제출자료)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내역
  - \* 주식매수선택권등의 부여·행사·지급내역, 행사·지급이익, 임직원 인적사항 등을 적은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제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 30 호의 5 서식)
- (제출시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주식기준보상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적용시기) 2024년1월1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등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 164 조의 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 94 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제 1 호의 자에게 제 2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 월 10 일까지 제 3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 가. 거주자
    - 나. 비거주자[제 2 호 가목의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주식기준보상(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 119 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임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행사한 경우
    - 나. 가목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기준보상(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지급받은 경우
  3. 임원등의 인적사항과 주식매수선택권등의 부여·행사 또는 지급 내역 등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제 1 항 제 3 호의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023. 12. 31. 신설)
- ③ 제 2 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법 164 조의 5 의 개정규정은 2024. 1. 1. 이후 임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주식기준보상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3. 12. 31.) 11 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6 조의 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 ① 법 제 164 조의 5 제 1 항 제 2 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2024. 2. 29. 신설)
1. 법 제 164 조의 5 제 1 항 제 1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임원등(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내국법인에 종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5 조 제 1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2. 임원등이 「법인세법」 제 94 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5 조 제 2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 ② 법 제 164 조의 5 제 1 항 제 2 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원등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5 조 【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 ① 법 제 2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 문의처

상기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TAX-JSG 의 다음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파트너 (Lee, SungJae)

Direct line : +82-2-6676-1837

Email : [sungjaelee@deloitte.com](mailto:sungjaelee@deloitte.com)

김명규 파트너 (Kim, MyeongGyu)

Direct line : +82-2-6676-1331

Email : [myekim@deloitte.com](mailto:myekim@deloitte.com)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Japanese Services Group(JSG)

저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전세계적인 조직인 Deloitte Touche Tohmatsu LLC(이하 “DTT” 또는 “딜로이트”)의 Member Firm 으로서 DTT 의 노하우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다른 Member Firm 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하에서 고객의 Needs 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법인은 DTT 의 일본기업을 위한 전문가 서비스조직인 JSG(Japanese Services Group)의 일원으로서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에 대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된 서비스조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JSG”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JSG 는 일본어에 의한 Communication 뿐만 아니라 해당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JSG 의 서비스 내용은 웹사이트 ([한국의 일본계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Seo, Jung Wook / TEL 02-6676-1871 / [juseo@deloitte.com](mailto:juseo@deloitte.com)

Lee, Ji Eun / TEL 02-6138-6680 / [JiEunLee1@deloitte.com](mailto:JiEunLee1@deloitte.com)

감사합니다.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안진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 2024.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